## 정보공개업무 처리세칙

제 정 2007. 5. 18

개 정(1) 2014. 5. 15

개 정(2) 2020. 9.29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및 시행규칙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 따라 공사의 정보공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이 세칙에서 "정보"라 함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
②이 세칙에서 "공개"라 함은 공사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정보공개 주관부서 및 소관부서) ①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(이하 "주관부서"라 한다)는 대외협력실로 한다.

②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"소관부서"라 함은 청구된 정보를 최종 생산한 부서를 말한다.

제4조(주관부서의 기능)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총괄
- 2. 정보공개관련세칙의 제·개정
- 3. 정보공개창구의 운영
- 4. 정보공개 편람의 작성 및 보완
- 5.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
- 6. 정보의 정기적 공표
- 7.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소관부서앞 이송
- 8. 각 부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

- 9.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5조(정보의 공표 등) ①주관부서장은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한국투자공사법 (이하 "공사법"이라 한다) 제36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,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, 간행물의 발간·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투자 공사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한다.
- 제6조(정보목록의 작성·비치 등) ①주관부서장은 당 공사가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, 그 목록을 정보통 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목록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문서제목·생산연도·업무담당자·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③주관부서장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, 정보공개청구서식,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·비치 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KIC의 의무

- 제7조(정보공개청구권자) ①모든 국민은 공사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
  - ②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  - 1.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
  - 2.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- 제8조(비공개대상정보) ①주관부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관련 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

- 제9조(정보공개청구서 접수) ①정보공개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다.
  - 1.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 및 연락처 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)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.
  - 2.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  - ②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사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 편·팩시밀리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다.
  - ③제1항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,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④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되 당해 부서에서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  - ⑤주관부서는 다른 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, 청구인에게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 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⑥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있다.
  - 1.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
  - 2. 우편·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
- 제10조(청구서 심사) ①각 소관부서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
  - 1. 청구된 정보가 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

- 2.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
- 3.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인지 여부
- 4. 기타 각 소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1조(정보공개여부의 결정) ①소관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) ①각 소관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간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주관부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에서 "부득이한 사유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 - 1.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  - 2. 정보를 생산한 부서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  - 3.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,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  - 4. 천재지변,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
- 제13조(제3자의 의견청취 등) ①각 부서장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3자에게 공개청구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. 다만, 소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각 부서장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와 협의 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) ①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제1항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등) ①주관부서장은 제11조에 의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·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②관련 부서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·복제물을 교부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.
  - ③각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.
  - ④각 부서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주관부서를 통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공개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부분공개) ①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각 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부분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정보공개방법)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.
  - 1. 문서·도면·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- 2. 필름·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  - 3. 마이크로필름-슬라이드 등은 시청-열람 또는 사본-복제물의 교부
  - 4.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교부

- ②주관부서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·출력물·복제물·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·팩시밀리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있다.
- ③제1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, 사생활의 비밀 그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정보의 전자적 공개) ①주관부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 ②주관부서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.
- 제19조(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)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절차를 거치지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  - 1.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
  - 2.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
  - 3.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
  - 4.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정보
- 제20조(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)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.
  - ②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(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·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7조제2항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·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7조제2호제2항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
  - 2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

-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,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
- 제21조(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) 주관부서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- 제22조(비용부담)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
  -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 (공개되는 정보의 사본·출력물·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)으로 구분하되,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 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
  - 2.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
  - 3.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③제2항 단서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.
  - ④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  - ⑤제2항의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현금으로 징수하여 회계규정에 따라 잡수입 처리한다.

## 제4장 불복구제절차

- 제23조(청구인의 이의신청)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사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2항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②공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

-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공사는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제3자의 이의신청 등) ①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, 제3자는 공사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- ③공사는 제2항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- 제25조(이의신청 방법) ①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.
  - 1.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)와 연락처
  - 2.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
  - 3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  - 4.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사는 제2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·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  - ③공사는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④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26조(관련서식) ①세칙 제9조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는 〈별지 제1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②세칙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〈별지 제2호 서식〉에 의하다.
  - ③청구서의 접수번호는 접수실명-정보공개-일련번호(예:대외협력실-정보공개-YYMMDD-1)로 표기한다.
  - ④세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〈별지 제3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⑤세칙 제9조제6항 및 제21조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〈별지 제4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⑥세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제24조제1항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〈별지 제5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⑦세칙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〈별지 제6호 서식〉에 의하다.
  - ⑧세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〈별지 제7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⑨세칙 제20조제2항제3호에 의한 위임장은 〈별지 제8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⑩세칙 제22조제2항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.
  - ⑪세칙 제23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〈별지 제9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①세칙 제23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〈별지 제10호 서식〉에 의한다.
  - ⑤세칙 제25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〈별지 제11호 서식〉에 의한다.

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5월 18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【별지 제1호】

#### 정보공개 청구서

		앙포궁.	M ST	- ^7				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	기간			
	성명(단체명 및 대표자	성명)		주민등	등록(여권・외	국인등록)	) 번호	
청구인	주소(소재지)			사업지	자(법인 • 단체	)등록번호	2	
	전화번호	팩스번호		전자위	우편주소			
청구 내용								
공개 방법	[ ]열람ㆍ시청 [ ].	사본 • 출력물	[ ]전자파일	빌 [ ]복저	・인화물	[		]기타(
 수령 방법	[ ]직접방문 [ ]	우편	[ ]팩스전송	송 [ ]정도	본통신망	(		]기타(
	[ ]감면 대상임		[ ]감면 대·	상 아님				
수수료	감면 사유							
 「공공기관 <u></u>								
같이 정보의	공개를 청구합니다.							
※ 공개 청극	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	l 전부 또는 일	부가 제3자	와 관련이	있다고 인정	정되는 경	경우에	는 법
제11조제3형	상에 따라 청구 사실이	제3자에게 통	지됨을 알려	드립니다.				
						년	월	일
/ニュニニ		충	<b>성구인</b>				(서명 또	는 인)
(안국누사	공사 사장) 귀하							
		유 9	의 사 항					
수수료 감면	사유란은 「공공기관의 경		· · ·	제17조제3		 수료 감면	 ! 대상에	 I 해당
하는 경우에민	· 적으며, 감면 사유를 증	명할 수 있는 서류	루를 첨부하시	기 바랍니다.				
		Tale Tale Tale Tale Tale Tale Tale Tale	- 수 증					
접수번호			청구인 성명					
접수부서			접수자 성명			(,	서명 또 <del>·</del>	는 인)
기하이 처구시	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	· !스니다						
1141-1 0 17		(D-1-1)	_			년	월	일
	<u></u>	ᇀ키고		<b>TIO</b>				

#### 【별지 제2호】

#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	리기간				
	성명(법인명 등 등	및 대표자)		주민등록(	(여권 • 의	외국인등·	록)빈	호	
청구인				사업자(법	인ㆍ 단체	ᆐ)등록번	호		
8 I L	주소(소재지)			전화번호(		:번호)			
				전자우편-	주소				
정보내용									
공개 방법	[ ]열람·시 청	[ ]사본·출력 물	력 [ ]건 일	전자파 [	]복제 •	인화물	[	]기타(	)
수령 방법	[ ]직접방문	[ ]우편	[ ]팩스	:전송 [	]정보통	신망	[	]기타(	)
 수수료	해당여부 [ ]	해 당 [ ]혀	<b>바</b> 당없음						
감면	감면사유								
	직급		성명						
(담당공무원									
등)								서명	또는 인
그 스 되	기관명(기관인 경	우)	직급						
구술자 (청구인)			성명					서명	또는 인
(012)	성명(일반인인 경	우)						서명	또는 인
	••••••		<b>ゴ</b> 수 경	<u>S</u>	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	••••••
접수번호		2	청구인 성 명						
접수자직급			성 명					(서명 !	또는 인)
귀하의 청-	구서는 위와 같이	접수되었습니	다.						
						년		월	일
		한 국 투 자 공	사사	장	직인				
		<u>-</u> - 1 ~ 6	, ri - ri		712				

※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(담당부서 및 전화번호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【별지 제3호】

##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

수신자	O	
정보내용		
접수일 및 접수번 호		당초 결정기한
연장사유		
연장 결정기한		
기타 안내사항		
대한 공개여부를 결정		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드리겠습니다.
		년 월 일
	한 국 투 자 공 사  사 장	직인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도 협조자(직위/직급) 서도		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
시행 처리부서명-	일련번호(시행일자)	
우편번호 /주소	/홈페이	지 주소
전화( )	/전송( ) /담당자	공식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

# 정보공개처리대장

접수 번호	접수일	청구인	청구사항	결정 내용	처리 사항

#### 【별지 제5호】

## 비공개요청서

접수번호			접수일		
제3자				전화번호	
	성명		연락처	모사전송번호	
				전자우편주소	
	주소				
청구인	성명				
8T1	주소				
정보니	내용				

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(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)

종합의견	[ ] 정보공개 허용	[ ] 비공개요청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,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(비공개요청서)를 제출합 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(비공개요청)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투자공사 사장 귀하

## 【별지 제6호】

# 제3자의견 청취서

접수번호			접수일		
성명					
주소					
직급			성명		서명 또는 인
기관인 경우 일반인인 경우	기관명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주소 연락처				서명 또는 인
	주소 직급 기관인 경우	주소	주소	정명 주소 지급 기관면 경우 지급 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정명	정명 주소

### 【별지 제7호】

# 정보 ([ ]공개 [ ]부분공개 [ ]비공개) 결정 통지서

(앞 쪽)

수신자 〇〇	○ (우 , 주소	)
접수번호		접수일
청구 내용		
공개 내용		
공개 일시		공개 장소
공개 방법	[ ]열람·시청 [ ]사본·출력물 [ ]전지	자파일 [ ]복제·인화 [ ]기타 물
수령 방법	[ ]직접방문 [ ]우편 [ ]팩스	스전송 [ ]정보통신망 [ ]기타
납부 금액	①수수료 <sub>원</sub> ②우송료 수수료 산정 내역	③수수료 감면액 <sub>원</sub> 계(①+②-③) 수수료 납입계좌(입금시)
비공개(전부 또는 일부) 내용 및 사유		
	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「공공기관의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.	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및
		년 월 일
	한 국 투 자 공 /	<b>사</b> 직인
기안자(직위/직 협조자(직위/직 시행 처리되 우편번호		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 /홈페이지주소
전화( )	/팩스( ) /담당자의 전	자우편 주소 /공개구분

#### 유 의 사 항

- 1.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명서
- 2.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수입인지 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로도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때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- 3.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적힌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.
- 4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 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5.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6.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7.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# 【별지 제8호】

## 정보공개 위임장

청구인	성명(법인명 등 및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 등)
(위임인)	주소(소재지)	
	성명	주민등록번호등
수임인	주소	
	위임인과의 관계	
정보내용		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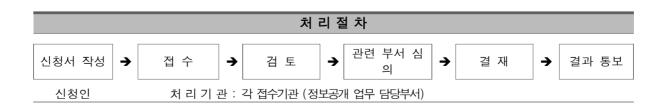
위임인 (서명 또는 인)

#### 【별지 제9호】

# 정보공개([]공개[]부분공개[]비공개) 결정 이의신청 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	X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				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:			
	성명(법인 등 명칭	및 대표자)	주민등록변	번호(사업자등	등록번호	등)	
이의 신청인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(	팩스번호)			
			전자우편?				
공개 또는							
비공개 내용							
10/11/11/0							
	[] 저ㅂ/고게.ㅂ		서르	<u></u> 년	월	일에	바아
통지서 수령		TTO/1 10/11/200/1	^I ㄹ	┖	2	ㄹ에	ᆮᄊ
유무	음.						
11 1	[] 정보(공개· <sup>-</sup>	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	서를 받지	못했음.			
이의신청의							
—							
취지 및 이유							
' 공공기관의	ㅣ 정보공개에 괸	·한 법률」 제18조제1	항 또는 기	제21조제2	항과 깉	<b>는</b> 빝	를 시
행령 제18조제	1항에 따라 귀기	관의 정보공개([]공	개 [] 두	부분공개 [	1 비공	<del>!</del> 개)결	정에
			" [ ]		. , ,	, .i,	· ''
내아어 귀와 실	날이 이의신청서를	회 제물압니다.					
※ 정보 공기	ㅐ 결정에 대한 (	기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	우에만 해	당됩니다.			
					년	월	일
		이의신청인			(서명	또는	인)
ᇵ구트기	· <b>공사</b> 귀하						
한국투자							



#### 【별지 제10호】

##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

수신자 ○○○ (우	, 주소	)
이의신청 내용		
접수일자 및 접수번호		당초 결정기간
연장 사유		
연장 결정기간		
그 밖의 안내사항		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
년 월 일

# 한 국 투 자 공 사 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		
협조자						
시행	처리과-일련번호(시	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		
우	주소		/ 홈페이지 주소			
전화( )	전송(	)	/ 기	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		

## 【별지 제11호】

# 이의신청 처리대장

※ 접수 번호	이의신청일자	청구인	주문내용	처리결과	결정통지일자

※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.

# <u>수 수 료</u>

	공개방법 및 수수료							
공 개 대 상	원본의 열람·시청	원본의 사본(출력물) · 복제물 · 인화물	전자파일의 열람·시청	전자파일의 사본(출력물) · 복제물				
문서 · 대장 등	○열 람 -1건(10매 기준)1회 : 200원 ·10매초과시5마타100원	○ 사본(1매 기준) -A3 이상 300원 ·1매초파타100원 -B4 이하 250원 ·1매초파타50원	○열 람 -1건(10매기준) 1회 : 200원 ·10매 초과시 5매다 100원	○사본(종이출력물) -A3 이상 300원 ·1매 초과마다 100원 -B4 이하 250원 ·1매 초과마다 50원 ○복 제 -1건(10매기준)1회: 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			
도면 · 카드 등	○열 람 -1매 : 200원 ·1매 초과마다 100원	○사본(1매 기준) -A3 이상 300원 ·1매 초과마다 100원 -B4 이하 250원 ·1매 초과마다 50원	○열 람 -1매: 200원 ·1매 초과마다 100원	○사본(종이출력물) -A3 이상 300원 ·1매 초과마다 100원 -B4 이하 250원 ·1매 초과마다 50원 ○복 제 -1건(10매기준)1회: 200원 -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			
녹 음 테이프 (오디오 자료)	○청 취  -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·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 -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·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	−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1건마다 3,000원	○시청·청취 -1편: 1,500원 ·30분 초과시 10분마500원	○복 제 -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 -700MB 초과시 350MB마다 2,5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			
녹 화 테이프 (비디오 자료)	○시 청 -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	○복 제 -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롤마다 5,000원 -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·1편마다 3,000원 ※ 매체비용은 별도						

항 팀 -	○시 청 -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·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 -여러 편이 1캔으로			
	이루어진 경우 · 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			
슬 라	○시 청	○복 제	○시 청	
이드	-1컷마다 200원	-1컷마다 3,000원	-1컷마다 200원	
	( ) T	※ 매체비용은 별도		
	○열 람 1기(10의 기조)1원	○사본(출물: 1매7중)	_	_
	-1건(10컷 기준)1회 : 500원	-A3 이상 300원 ·1매 초과마다		
	· 10컷 초과시 1컷마다	200원		
마이	100원	-B4 이하 250원		
크로	100 전	· 1매 초과마다		
필 름		150원		
		100 E		
		○복 제		
		-1롤마다 1,000원		
		※ 매체비용은 별도		
	○열 람	○인화(필름)	○열람	○사본(종이출력물)
	-1매 : 200원	-1컷마다 500원	-1매 : 200원	-1컷 : 250원
	· 1매 초과마다 50원	· 1매 초과마다	· 1매 초과마다	· 1매 초과마다
		3"×5" 200원	50원	3"×5" 50원
사 진		5"×7" 300원		5"×7" 100원
		8"×10" 400원		8"×10" 150원
사 진		○복제(필름)		○복 제
필 름		-1컷마다 6,000원		-1건(1MB 기준)1회 :
		※ 매체비용은 별도		200원
				-1MB 초과시 0.5MB미다
				100원
				※ 매체비용은 별도

비고: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